

의안번호	2203320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계번호	24B32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000만원, 2030년 5,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	50	-	50	-	50	150	30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5의2.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5호의 급여에 같음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함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삭 제>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5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의 구입·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는 제3항의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과 관리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제4항)	재량·의무규정
6	안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삭 제>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의무규정
7	안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만, 가입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4항)	
8	안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21조의5(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제5의2호 및 제6호) －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서 퇴직금제도를 삭제하여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14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1~100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본문 참조
2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미첨부(제14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임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관련한 기관부담금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의 예외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7조(수급권의 보호)	—	• 미대상 - 개정조항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유에 주택의 '임차'를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개정조항은 퇴직금 금액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며, 동 개정조항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지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금이 변화하므로 동 개정조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수” 및 “근로자의 개인별 평균임금” 등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미대상(제2항) -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퇴직 전에 퇴직금에 대한 사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의 ‘임차’를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대상(제3항 및 제4항) -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실정에 따른 처리)	—	• 미대상(제2항) -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전에 퇴직금에 대한 사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의 ‘임차’를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 미대상(제2항)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15조(급여수준)	—	• 미대상 - 개정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개정조항만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퇴직급여 등의 예외 대상자인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등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업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으나, 안 제12조와 제15조에 대한 개정조항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21조의 5(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 신설	○	• 추계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본문 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2조 제14호)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

- 첫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 따라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100명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인 요건이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 중에서 가입자의 월평균보수가 268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있음
- 둘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⁵⁾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지원대상자 중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기 곤란
 - 초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지원단가가 과소 추계될 가능성 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셋째,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연구용역⁶⁾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계하였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1~100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022-83호

5)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국재정학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효과성 분석」, 2023년 7월

- (안 제21조의5)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본 추계서는 장래에 발생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정책연구비용의 평균값(5,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 실태조사 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개정안에 따라 2년 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	50	-	50	-	50	15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000만원, 2030년 5,0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